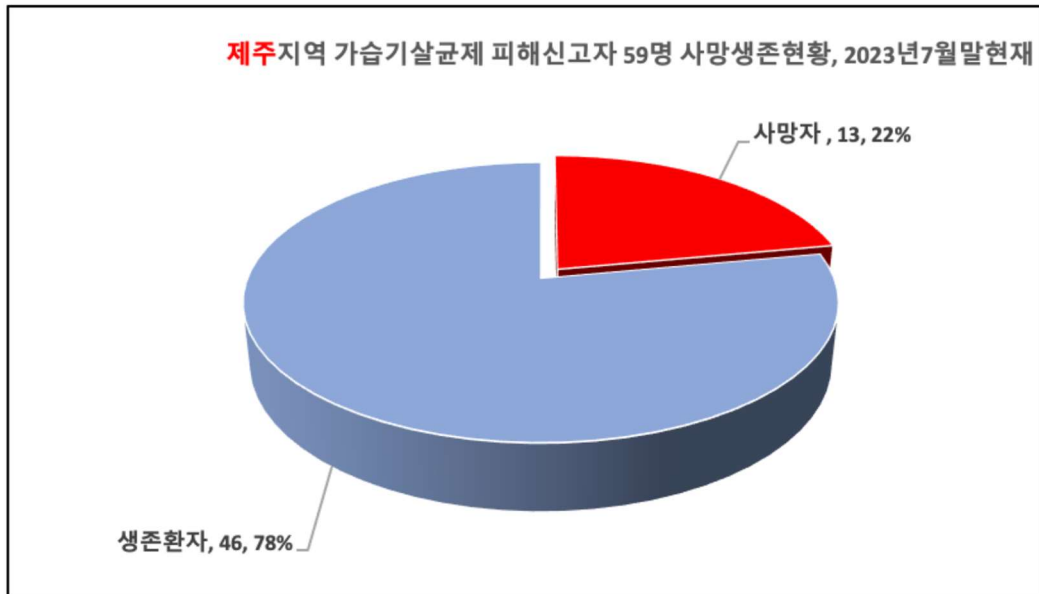


제주환경운동연합 & 환경보건시민센터 보도자료 2023년 11월20일자

제주지역 가습기살균제 피해 현황

제주지역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 59명, 이중 22% 13명은 사망했다



신고자 중 피해구제법 인정자 40명, 이중 사망 8명 생존 32명

최근 논란이 된 폐암환자는 제주 2명 (이중 1명은 사망)

지난 7년간 제주지역 피해신고자 38명 늘어나

끝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가해기업에 대한 사법책임 묻고, 제대로 된 피해 배보상 및 재발방지 절실

제주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www.eco-health.org

목차

1. 제주지역 가습기살균제 피해실태
2.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행 경과
3.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 남은 과제는
 - 3-1. 가해기업에 대한 사법처벌
 - 3-2. 피해자찾기와 피해인정 그리고 배보상 및 사회적 위로
 - 3-3. 정부책임 규명
 - 3-4. 유사참사 재발방지와 사회적 교훈
4. 최근 대법원의 옥시제품 사용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 확정판결에 대하여
5. 제주지역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모임
 - 내용문의:
 - 제주환경운동연합 이영웅 사무처장 010-4699-3446
 -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1. 제주지역 가습기살균제 피해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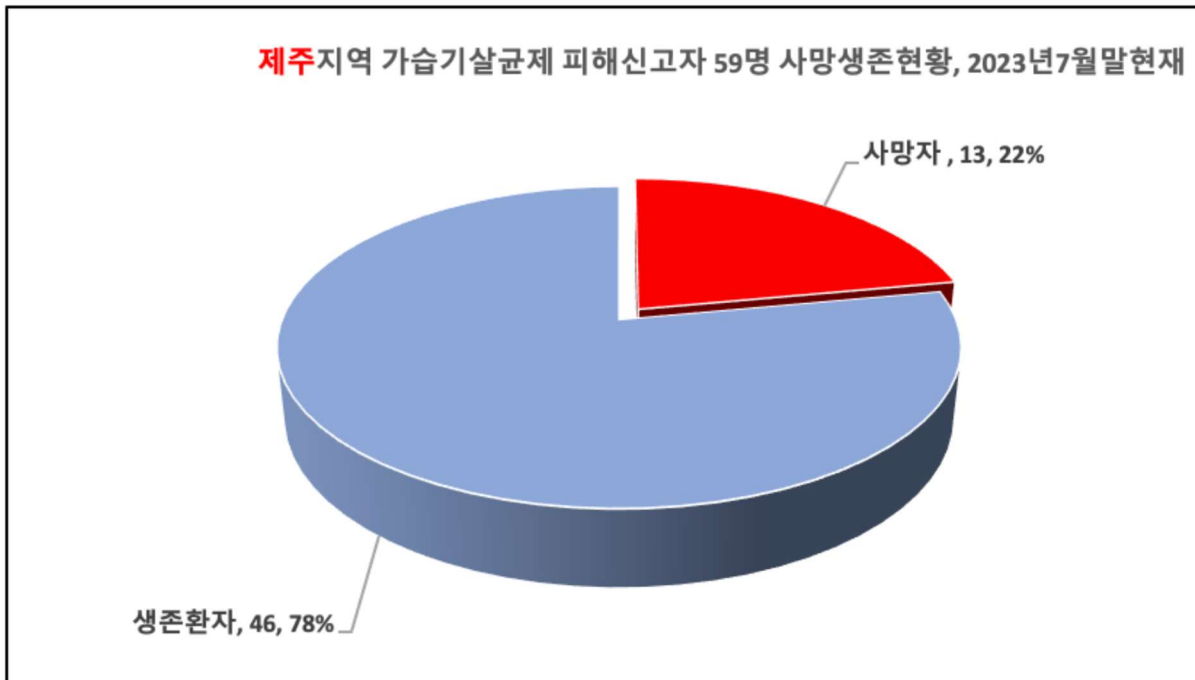
제주지역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가 2023년 7월말까지 5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사망자는 22% 13명이고 생존환자는 46명이다. 신고자 5명중 1명꼴로 사망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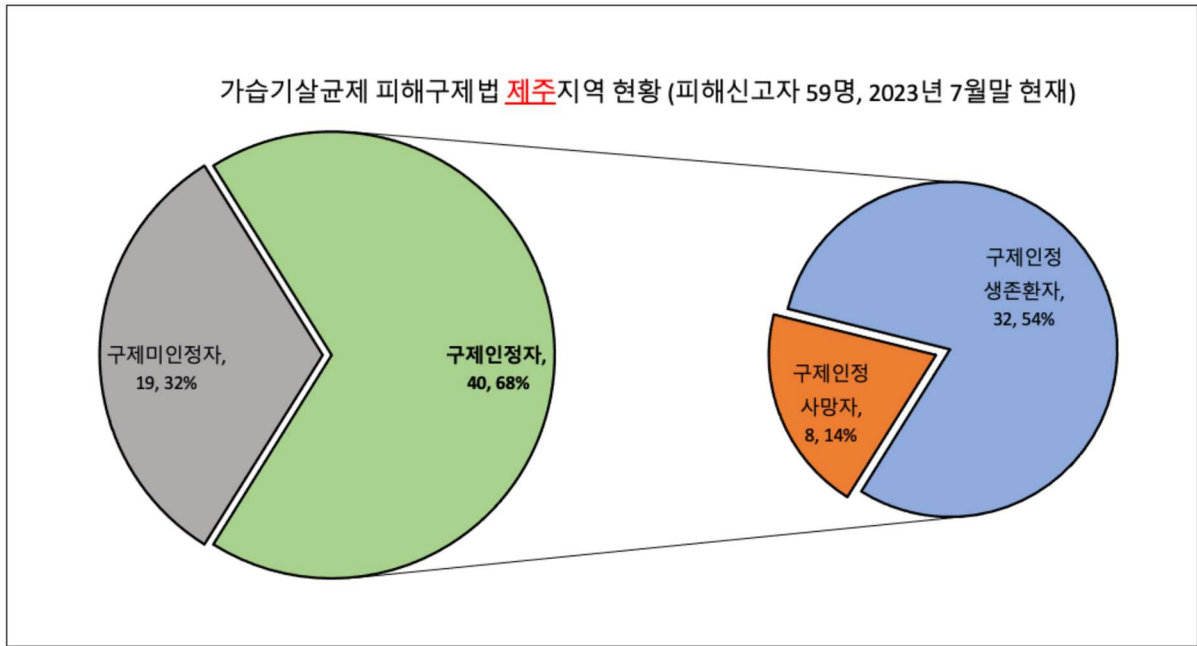
신고자 중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의한 **구제대상 인정자는 40명으로 전체 신고자 59명의 68%**다. 피해구제인정자중 8명은 사망했고 생존환자는 32명이다. 구제법 미판정 및 불인정자는 전체 신고자 59명중 32%인 19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5명이다. 아직도 상당수의 피해신고자들이 미판정 혹은 불인정 상태인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된 폐암의 경우 **제주지역 피해신고자 59명중 폐암환자는 2명인데 이중 1명은 사망했다.**

이러한 실태는 제주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2023년 8월31일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 12주년을 맞아 국회 등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및 구제업무를 맡고 있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센터]에 정보공개를 신청해 밝혀졌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7년전인 2016년 9월12일 발표한 조사보고서에서 2016년 7월말까지 제주지역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가 21명(사망5명)인 것으로 밝힌 바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 254호 클릭](#)) 따라서 지난 7년간 제주지역에서 38명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가 늘었다. 사망신고자는 8명 늘어났다. 피해구제법은 2017년부터 시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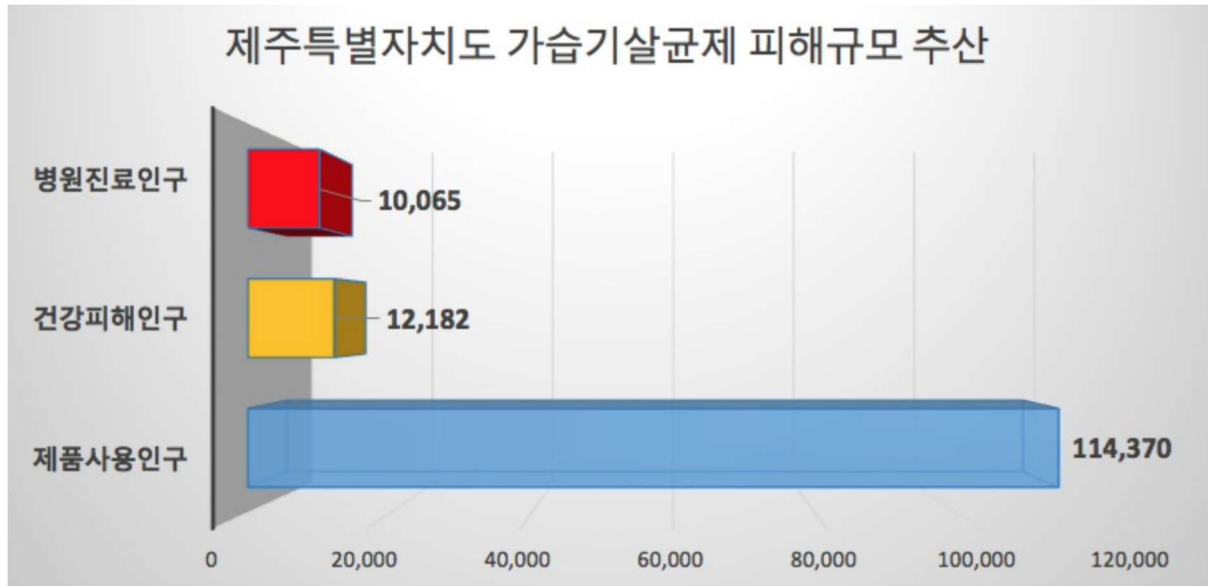
구분		합계	서귀포시	제주시
신청자	합계	59	16	43
	사망	13	4	9
	생존	46	12	34
구제법 인정자	합계	40	12	28
	사망	8	3	5
	생존	32	9	23

<표,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별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및 구제법인정현황, 2023년7월말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별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현황을 보면, 제주시 143명, 서귀포시 16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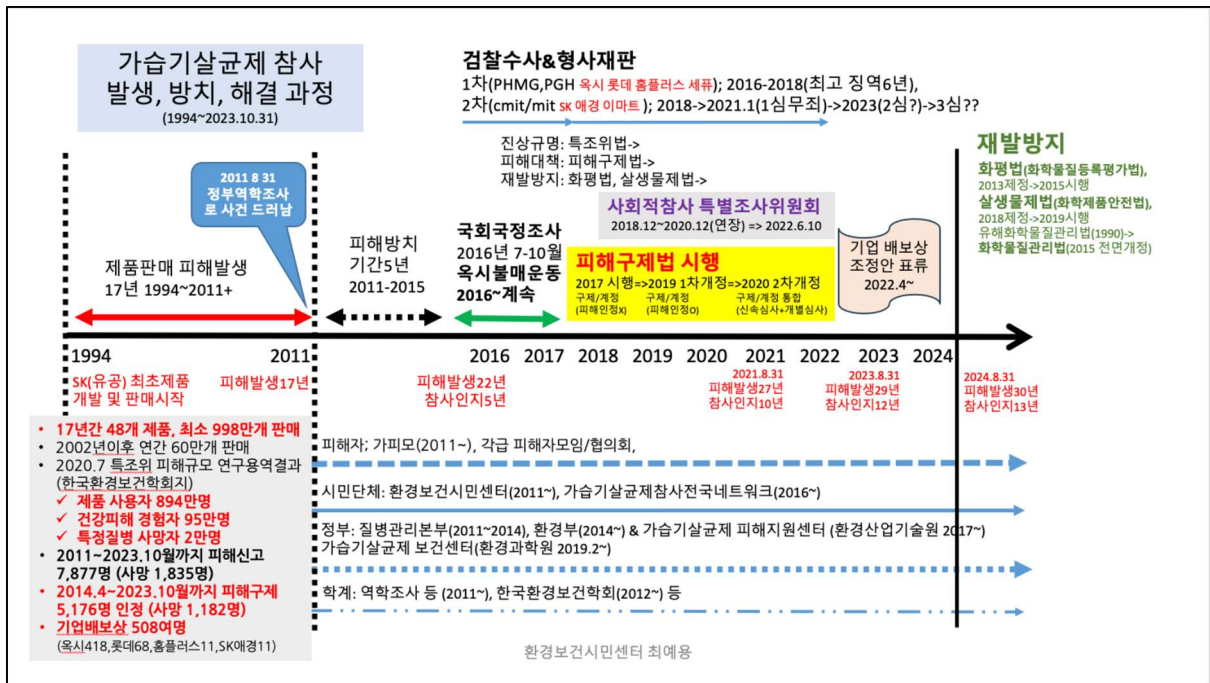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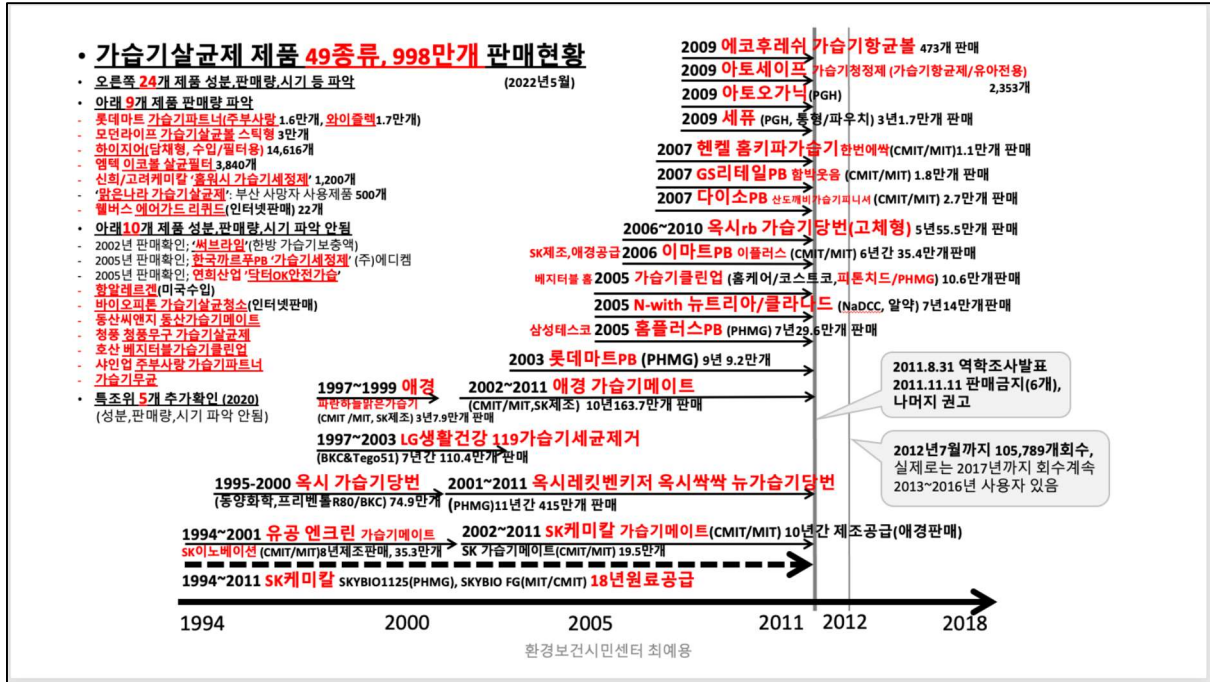
한편 제주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2021년6월21일 발표한 보고서 '제주지역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에 의하면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가습기살균제 제품 사용자는 114,370명으로 추산되고 이중 건강피해자는 12,182명으로 추산된다.** ([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 369호 클릭](#)) 이는 사회적 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전국규모의 피해자조사 결과를 근거로 추산한 결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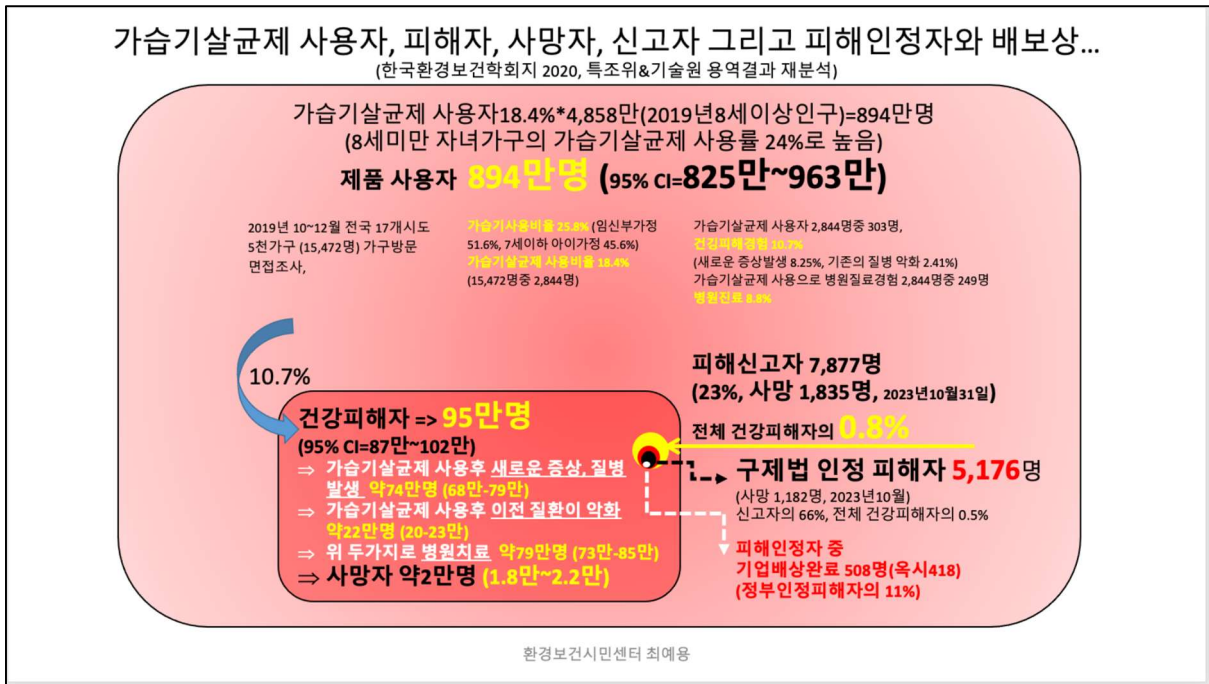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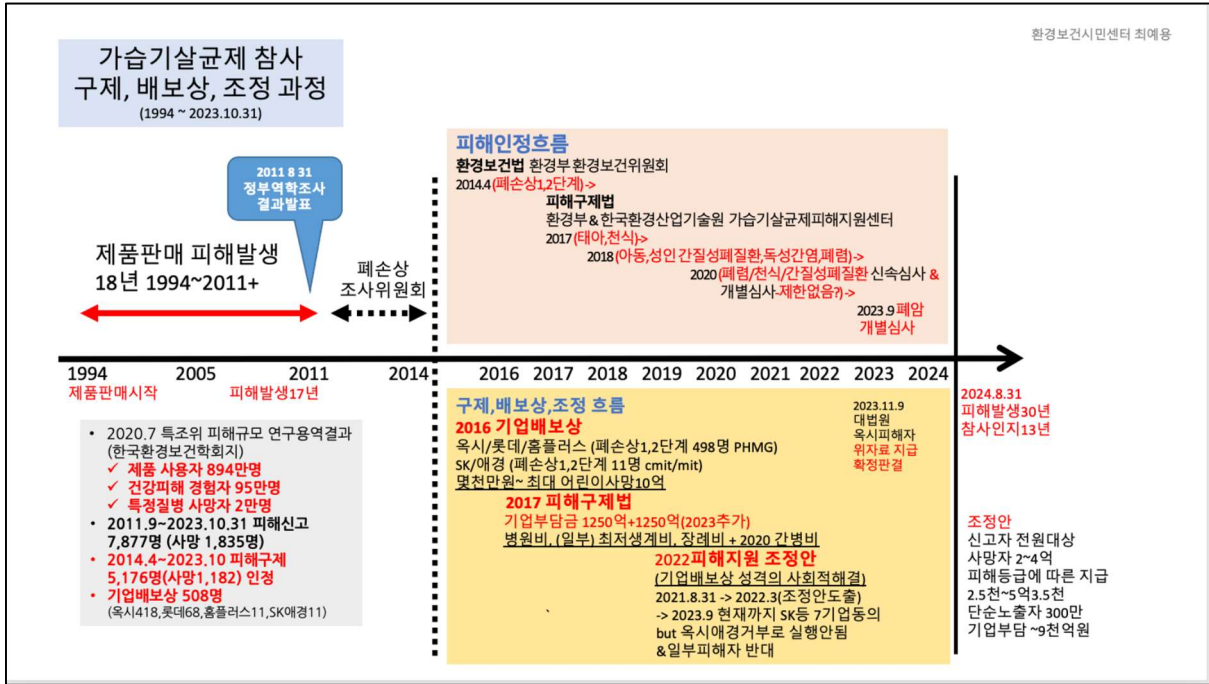
이를 바탕으로 비교해보면, 2023년 7월말까지의 제주지역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 59명은 제주지역 건강피해자 전체추산치 12,182명과 비교하면 0.48%에 불과하다. 100명중 1명도 채 신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2.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행 경과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 처음 제품 판매가 시작되어 2011년 8월에 세상에 알려졌고 그해 11월부터 생산과 판매가 금지되었는데, 워낙 사용자와 피해자가 많아 사용이 금지된 지 12년이 지나고 있지만 피해신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3.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 남은 과제는

3-1. 가해기업에 대한 사법처벌

현재 SK,애경,이마트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중이다. 이들은 전체 가습기살균제 판매제품의 절반 가량을 제조판매했고 피해자도 다수 발생했지만 살균성분인 cmit/mit에 대한 독성확인이 제대로 안됐다는 이유로 2021년초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후 사회적 공분이 크게 일었고 2심재판에서 새로운 증거가 채택되는 등 분위기가 달라졌다. 오는 10월26일 마지막 공판을 거쳐 2024년 1월11일 2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피해자들과 환경시민단체들은 'SK,애경,이마트 유죄다'라는 슬로건으로 사회각계의 탄원서를 조직해 재판부에 제출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PHMG, PGH라는 살균성분을 사용한 옥시레킷벤키저, 롯데마트, 홈플러스, 세류 등 제조사들에 대한 형사재판은 2016년에 시작되어 2019년초 모두 유죄가 최종 선고되었고 옥시사장 신현우 등 6년 실형이 판결되어 2021년까지 만기 복역했다.

3-2. 피해자찾기와 피해인정 그리고 배보상 및 사회적 위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막대한 피해자 규모와 사망, 중증폐손상, 영구적 신신체결손, 각종 호흡기장해 등의 피해를 낳았다.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7년동안 1천만개의 제품이 판매되었고 894만명의 제품 사용자, 이중 건강피해자 94만명 사망자 2만명으로 추산되는 최악의 환경보건참사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극히 일부의 피해자만 신고되고 구제인정되었을 뿐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피해자인지 알지도 못한채로 방치되어 있다. 이때문에 2018~2020년까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대형마트에서 가습기살균제를 구매한 기록을 바탕으로 구매자들에게 구매이력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피해자찾기 시범사업을 전개해 상당한 성과를 내기도 했다.

한편 2017년부터 시행된 피해구제법에 의해 상당수의 피해신고자들이 피해자로 인정되고 병원비, 요양수당비, 장의비 등 기초적인 비용이 구제금으로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폐암, 피부질환 등 아직 피해가 인정되지 않은 질환이 남아있고, 구제인정되어도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포함한 배보상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때문에 참사가 알려진 지 10년이 되던 2021년 8월말에 피해지원을 위한 조정위원회가 만들어져 2022년초에 조정안이 나왔는데 일부기업만 찬성하고 가장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킨 옥시와 애경이 반대해 무산된 상태다. 기업들은 조정안으로 모든 책임을 면책하는 소위 '종국성'을 주장하고 있다. 최근 옥시와 애경은 피해구제법에 의거한 구제기금 납부를 반대하고 이중 애경은 행정소송 및 위헌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일부 중증 피해자들의 경우 조정안으로는 평생 치료와 지원이 부족하다며 조정안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시점에서 바람직한 피해대책은 1) 배보상을 위한 정신적 경제적 위자료는 보완된 조정안으로

하고, 2) 치료는 피해구제법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3년9월26일 오마이뉴스 투고글 ['가습기살균제 피해대책, 조정안과 구제법 모두 필요하다'](#) 를 살펴보세요)

이렇게 제조판매기업들이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하면서 피해자들을 괴롭히고 있다. 결론적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제대로 찾아내지도 못하고 있고, 신고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인정도 허술한 상태이며, 피해가 인정된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3-3. 정부책임 규명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제조판매기업들의 문제와 더불어 환경부, 산업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여러 정부기관의 책임이 큰 사건이다. 그런데 아직 정부책임에 대해서는 제대로 책임이 규명되지 않고 있다.

2016년 국정조사, 2018~2022 사회적참사특조위 등에서 잘잘못이 어느정도 가려졌지만 정작 사법처리된 정부관료는 한 명도 없다. 단지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통령이 정치적인 의미의 사과를 했을 뿐이다.

3-4. 유사참사 재발방지와 사회적 교훈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단군 이래 최악의 환경참사,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생활화학제품 및 바이오사이드 참사 등으로 불린다. 유사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해 화학제품안전법, 화학물질평가및등록예관한법을 등이 제정되고 기존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전면개정되는 등 제도가 많이 보완되었지만 여전히 불안한 상태다.

단적인 예로 가습기살균제처럼 분사형 스프레이방식의 생활화학제품 들이 시중에 엄청나게 사용되지만 단 한 제품도 호흡독성안전시험을 거쳐 안전이 확인된 경우가 없다. 완제품의 안전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단지 제품성분만 관리할 뿐이다.

4. 최근 대법원의 옥시제품 사용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 확정판결에 대하여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기업인 옥시(현, 레킷 Reckitt)와 한빛화학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피해자가 2015년 소송을 제기한지 9년만에 나온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자의 민사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약 대법관)는 2023년 11월 9일 옥시제품 사용피해자 김옥분씨가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와 납품업체 한빛화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동안 옥시썩썩 가습기당번을 사용하다 2010년 폐질환이 발생한 제주도 거주 김옥분씨는 정부에 피해신청을 했는데 2014년 정부의 첫 판정때 폐손상 3단계 판정을 받았다. 당시 정부는 폐손상 1,2 단계만 피해자로 인정했고 3,4 단계는 인정하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큰 반발이 일어났다.

사건 초기 정부의 판정기준은 폐손상에 대해 1~4 단계로 나누어 판단했는데 3 단계는 '관련성 낮음', 4 단계는 '관련성 없음' 이었다. 참고로 폐손상 1~4 단계 판정은 2017년부터 시행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이전의 판정방식이었고, 이후에는 이전의 폐손상의 단계구분 판정 방식과 달리 천식, 간질성폐질환, 폐렴, 기관지확장증, 태아피해 등으로 인정 질환이 확대되었다. 김옥분씨도 이 법에 의해 피해구제대상자로 인정되었다.

2015년에 김옥분씨는 자신의 피해를 인정하지 않은 정부법원에 호소하기로 하고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지만 2심은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가해기업인 옥시와 한빛화학에 책임을 물었다. .

이번 판결의 의의는 매우 크다.

첫째, 피해자찾기, 건강피해확인, 기업과 정부책임 진상규명, 재발방지 등 가습기살균제 관련 어느 것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나온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의 첫 승소라는 점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해결과정에서 한 획을 긋는 매우 중요한 판례가 만들어진 것이다. 현재 수백명의 피해자들이 수십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지만 대부분 1심판결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나온 가해기업의 책임을 묻는 확정판결은 매우 의미가 크다. 진행되고 있는 다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기업책임을 묻는 판결이 연이어 나올 수 있다.

둘째, 정부와 기업이 인정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사례에 대해 법원이 기업에 책임을 묻는 확정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피해구제법 시행으로 피해인정범위가 넓어졌지만 앞으로 정부와 기업의 피해인정 범위가 더 넓어지고 병원비만 지원하는 구제를 넘어 정신적, 경제적 피해의 위자료를 포함한 배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셋째, 2021 년초 법원은 일부 가해기업에 대한 형사재판 1 심에서 무죄를 판결해 큰 사회적 비난이 일어났다. 이후 2 년동안의 2 심 공판이 진행되었고 2024 년 1 월 11 일 2 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이번 판결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소비자의 건강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의 판결이지만 SK 애경 이마트의 형사재판 항소심 판결에서 기업의 책임을 묻는 유죄판단이 나올 수 있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최악의 환경참사이자 소비자피해사건인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대해 앞으로 법원이 사법정의를 구현해 문제해결의 초석을 놓기를 기대한다.

한편 이번 판결은 몇가지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첫째, 손배소를 제기한 피해자의 주장을 일부만 받아들였다는 점이다. 2 천만원을 요구한 1 심은 패소했고, 3 천만원을 요구한 2 심은 위자료 500 만원만 인정했고 대법원인 2 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기업의 책임을 묻는 첫 확정판결이라는 의미에도 불구하고 가해기업의 책임치고는 너무 적다. 앞으로 이번 판례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피해배상이 인정되는 판결이 나와야 한다.

둘째, 올해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판매되기 시작한지 29 년째이고,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12 년이 지나고 있다. 사법적 판단이 9 년이나 지나서 나온다는 것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고통 속에 신음하며 죽어가는 상황에서 너무나 늦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법원이 보다 신속하게 피해자들의 편에 서야 한다.

2023 년 10 월말 현재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는 모두 7,877 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1,835 명이다. 한 달 전에 비해 사망자가 8 명이나 늘었다. 새로운 피해자가 계속 신고되고, 피해자들은 계속 죽어간다. 2017 년에 시작된 피해구제법으로 현재까지 5,176 명이 피해자로 인정되었다. 신고자의 35% 2,701 명은 아직 판정되지 않았거나 불인정 되었다. 사망자도 653 명이나 미판정 혹은 불인정이다.

피해구제법으로 인정된 5,176 명의 피해자들이 사용한 여러가지 가습기살균제 제품 중에서 옥시제품을 사용한 경우는 4,522 명으로 전체의 87%나 된다. 전체 피해자들의 절반정도가 복수의 여러 제품을 사용했는데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옥시제품을 사용한 것이다. 영국회사 레킷(Reckitt)의 100% 한국지사인 옥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주범중의 주범인 것이다.

피해구제법은 의료보험이 인정하는 최소한의 의료비지원 정도에 그친다. 신체 및 경제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피해와 위자료를 포함한 배보상은 별도로 이루어져야 이 참사에 대한 금전적 측면의 해결이 완료된다. 그러나 옥시와 다른 가해기업들은 구제법에 의해 인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중 폐손상 1,2 단계 인정자 500 여명외에 4500 여명의 피해자들에 대해 전혀 배보상하지 않고 있다.

SK 가 가습기살균제라는 제품을 처음 개발해 세상에 내 놓은 것이 1994 년이었다. 그후로 29 년이 흘렀다. 2011 년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세상에 처음 알려졌고 생산판매 및 사용이 금지되었다. 그후로 12 년이 지났다. 그런데도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 10 월에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공청회가 열렸다. 그 자리에서 국회의원들은 2021 년에 나온 배보상을 위한 조정안이 왜 실현되지 않는지 옥시, 애경, SK 등 가해기업 책임자들에게 따져물었다. 옥시 사장은 "가습기살균제의 원료를 공급한 SK 의 책임분담율이 더 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똥 묻은 놈이 겨 묻은 놈을 나무란다'라는 옛말은 이런 경우에 해당할까.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제품제조판매사, 원료공급사 모두의 책임이다. 전체 90%이상 가습기살균제 시장에 원료를 공급했던 SK 의 책임이 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수천명의 무고한 사상자를 발생시킨 대규모 소비자 집단살인사건의 피해대책을 논의하는 국회 청문회 자리에서 주범격인 옥시와 SK 가 서로 책임을 떠밀며 자신의 잘못을 덜어내려는 모습은 가증스럽기 짝이 없는 불쌍사나운 것 이었다. SK 의 원료공급 책임문제는 조정안에서 옥시의 책임을 줄이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SK 의 책임은 기존 조정안에 더해 추가되어야 한다.

사실 많은 피해자들은 '조정안'이란 것이 제대로 된 배보상 피해를 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너무나 당연한 지적이다. 중증천식과 폐질환, 폐암 등을 안고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피해자들 입장에서 얼마되지 않는 금액의 '조정안'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러나 독성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법원에서 가해기업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있고, 가해기업들은 배째라는 자세로 오리발을 내밀며 시간끌기만 계속하고 있다. 2016 년부터 분노한 시민들이 옥시불매운동에 나섰고, 국회 국정감사와 특별조사위원회가 가동되었고 피해구제법 등이 만들어졌지만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나면서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점점 잊혀져가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문제는 다음과 같이 해결되어야 한다.

- 첫째, 조정위원회는 중증폐질환, 폐암 등의 피해를 고려해 조정안을 보완해야 한다.
- 둘째, 추가피해자들이 계속 신고되고 있고 폐암과 같은 새로운 피해가 밝혀지는 상황에서 조정안을 이유로 가해기업들의 책임을 면책하는 소위 '종국성'은 있을 수 없다.
- 셋째, 중증질환의 평생 치료는 조정안이 담보할 수 없으므로 조정안이 실현되더라도 구제법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2016 년 검찰 수사의 칼 끝이 옥시를 겨눌때 옥시는 할 수 없이 배보상 계획을 제시했다. 그러나 옥시의 배상은 폐손상 1,2 단계 판정피해자 400 여명에 불과했다. 피해구제법에 의해 인정된 4 천 여명의 옥시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않고 있다.

어제 나온 대법원 판결은 분명하게 옥시의 잘못을 지적하고 배보상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이제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인 옥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최대 가해기업으로서 배보상을 비롯한 문제의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옥시와 영국본사 레킷(Reckitt)에 요구한다.

하나, 옥시는 모든 피해자들에 배보상하라

둘, 옥시는 중증폐질환, 새롭게 밝혀지는 폐암과 같은 만성질환에 대한 추가대책을 제시하라.

셋, 인터폴 수배자 거라브제인 등 옥시 영국본사의 관련자들은 속히 한국 검경의 수사를 받아라.

넷. 위의 대책을 마련해 옥시 영국본사 CEO 는 한국에 와서 피해자들과 한국국민에 사죄하라.